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5.01.01)

NH-Amundi HANARO 200선물인버스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펀드코드: CD699)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NH-Amundi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파생상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가격 하락위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신탁으로 상장폐지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NH-Amundi HANARO 200선물인버스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파생형,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김지연	1993	책임 (과장)	17	2,386	-26.46	4.61	-23.88	4.86	7년 8개월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ETF운용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부책임 운용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관리 감독(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시)에 담당 본부내(혹은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상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추적오차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은 F-KOSPI20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음(陰)의 1배수로 연동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 보수, 지수사용료, 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음의 1배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적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음의 1배수가 연동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F-KOSPI200 지수와 양(陽)의 상관관계 발생 위험	이 투자신탁은 F-KOSPI200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음(陰)의 1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신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누적적으로는 F-KOSPI200 지수 누적수익률의 음(陰)의 1배수를 추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이 투자신탁과 F-KOSPI200 지수의 누적수익률간의 양(陽)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p>기초지수 특성에 따른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기초지수인 F-KOSPI200 지수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의 최근월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로, 기초지수의 구성내역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기초로 하는 코스피200 주가지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F-KOSPI200 지수의 수익률은 코스피200 주가지수 수익률과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롤오버(Roll-Over)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가지수선물의 매도 등 파생상품을 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선물 등 파생상품은 현물과 달리 만기일이 도래하기 때문에 최근월물 파생상품에서 차근월물 파생상품으로 재투자를 해야 하며, 재투자 가격이 만기일의 만기상환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위험[롤오버(Roll-Over)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 등에 노출될 경우 투자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p>						
	<p>누적수익률과 과리위험</p> <p>이 투자신탁은 KOSPI200 지수선물의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F-KOSPI20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음(陰)의 1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일간단위로만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음(陰)의 1배수로 추구하는 것이므로 투자기간 전체에 대해서 누적하여 음(陰)의 1배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p>						
	<p>상장폐지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법령 등에서 정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은 해지되고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 시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지연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기간 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수익증권의 금전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p>						
<p>※ 추가적인 투자위험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매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투자자: 장내 매수 법인투자자: 장내 매수, 설정 청구 						
환매수수료	<p>환매 방법</p> <p>해당사항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투자자: 장내 매도 법인투자자: 장내 매도, 환매 청구 						
기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정방법: 당일 공고 기준가격 = 직전일 순자산총액/ 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1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지정참가회사 · 판매회사의 영업점과 지정참가회사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 한국거래소(www.krx.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과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과세의 주요 내용</th></tr> </thead> <tbody> <tr> <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 <td>수익자</td><td>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 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p> <p>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0년 7월 1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ETF의 과세표준 및 매매내역관리, 원천징수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거래 증권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A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p> <p>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p> </td></tr> </tbody> </table>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 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p> <p>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0년 7월 1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ETF의 과세표준 및 매매내역관리, 원천징수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거래 증권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A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p> <p>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p>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 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p> <p>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0년 7월 1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ETF의 과세표준 및 매매내역관리, 원천징수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거래 증권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A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p> <p>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p>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NH-Amundi 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68-3600/ 인터넷 홈페이지: www.nh-amundi.com)		
운용관련 자문업자	해당사항 없음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총액에 제한 없음
효력발생일	<u>2025년 2월 21일</u>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주요업무),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45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Nh-amundi.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Nh-amundi.com)